

# 2023년도 제2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록

## I 개최개요

- 일 시 : 2023. 3. 23.(목) 15:00~16:05
- 장 소 : 1호관 507호 영상회의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4명, 불참 6명
  - 참석위원(14명)
    - 위원 강현철, 위원 박종돈, 위원 서정현, 위원 이정두, 위원 김동원, 위원 임조순, 위원 김경선, 위원 이광호, 위원 최수봉, 위원 김동배, 위원 조길수, 위원 박일충, 위원 송인석, 위원 이현구
  - 불참위원(6명)
    - 위원 최병조, 위원 이영애, 위원 김규원, 위원 한민섭, 위원 이주호, 위원 조병관

## II 회의결과

- 제5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 안전요지[보고자:교무과장]

- 제안사유  
가. 「공무원 보수규정」 중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및 관련 조항 개정(2023.1.6.)에 따라 봉급 및 근속가봉 인상액을 본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2023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 인상액 적용(인상률 1.7%)
    - 근속가봉 인상액: 7만5800원(기존 7만4500원)
-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2

-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실제 급여 인상 적용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2023년도 인천대학교 교직원 급여 지급 안내 【총무과-234호(2023.1.9.)】

- 나.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2022.7.8.자)에 따른 변경·신설된 전공의 주임교수 보직수당 지급을 위해 보직수당 지급대상표에 반영하고자 함.
- 다. 2022.11.24.자 LINC사업단이 대학 내 부속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보직수당 지급대상표에 반영하고자 함.
  - LINC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임명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대학 내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 부여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 주요내용

가. [별표1]의 교원 봉급표 개정

- 교원 호봉별 봉급표 인상액 및 근속가봉 인상액 반영

나. [별표6]의 보직수당 지급대상표 개정

- 부속기관장 ‘가’ 급에 LINC사업단장 추가
- 전공주임교수-대학원에서 교수설계·교육미디어전공, 교육과정·수업컨설팅전공을 삭제하고 수업설계·수업컨설팅전공, 평생·직업교육전공 및 아동예술심리치료전공 추가

○ 관계법령

가. 「공무원 보수규정」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다.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라.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 심의결과 : 추가 질의 및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6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보고자:교무과장]

○ 제안사유

가. 「공무원 보수규정」중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및 관련 조항 개정(2023.1.6.)에 따라 봉급 인상액을 본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별표12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 (전년대비 1.7%인상)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1,500원을 뺀 금액

나. 「공무원 보수규정」부칙 제2조에 의거 실제 급여 인상 적용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2023년도 인천대학교 교직원 급여 지급 안내【총무팀-234(2023.01.09.)호】

○ 주요내용

가. [별표1]의 조교 봉급표 개정

- 조교 호봉별 봉급표 인상액 반영

○ 심의결과 : 추가 질의 및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7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보고자:총무과장]

○ 제안사유

가. 공직유관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위 행위 등으로 해임되거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33조 뒤에 “제7장 임원의 퇴직금” 삽입

나. 제34조(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신설

○ 심의결과 : 추가 질의 및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8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공용차량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보고자:총무과장]

- 제안사유  
가. 인천대학교 공용차량 관리규정의 전용차량 운행 범위를 개정하여 교육부 감사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차량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 이사장 삭제 및 감사(상근) 추가
- 관계법령  
가. 인천대학교 공용차량 관리 규정 [붙임1]

○ 주요 질의 및 응답

- 교육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과 타 국립대학의 현황 설명을 요청함.  
↳ 교육부 감사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근 감사에게 차량을 배정한 것이 지적사항이며, 타 국립대는 감사가 없고 법인대학인 서울대와 저희 대학만 감사가 있음.
- 이사장님의 활동에 따라 규정을 바꿀 수 없으니 지원기준을 정하길 요청함.  
↳ 법률과 정관에 이사장은 비상근, 감사는 상근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법의 취지에 따라 법인대학으로 상근 감사에게 공용 차량을 지원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심의결과 :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9호, 제10호, 제11호 심의안건 일괄상정

□ 제9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 폐지안

○ 안전요지[보고자:시설관리팀장 직무대리]

- 제안사유  
가. 대학 규정 정비 추진에 따라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단기 사용허가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 전부 삭제

○ 심의결과 : 추가 질의 및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 제10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지침

### 제정지침안

#### ○ 안전요지[보고자:시설관리팀장 직무대리]

##### ○ 제안사유

가.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단기 사용허가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지침」으로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규정 정비 추진에 따라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 폐지와 동시에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운영 지침」 제정

나.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운영과 시설물의 단기 사용허가 성격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행화

#### ○ 주요 질의 및 응답

##### ○ 규정을 지침화 하면서 추가 및 삭제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 용어정리,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 사용제한, 사전협의, 사후통보 등의 내용이 삭제됨.

##### ○ 규정과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

⇨ 규정에 총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으면 지침을 제정하게 되고,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은 지침은 교육연구위원회에서, 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어있음.

#### ○ 심의결과 :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 제11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자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 안전요지[보고자:재무회계팀장]

##### ○ 제안사유

가. 대학 규정 정비 추진에 따라 「인천대학교 자산관리 규정」 개정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 폐지되고,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대학교 자산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 심의결과 : 추가 질의 및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 제12호 심의안건 : 재단법인 아이앤유파트너스 정관 제정안

### ○ 안전요지[보고자:교무과장]

#### ○ 제안사유

- 가. 우리대학의 창업지원 역량확대 및 창업지원 조직의 투자기능 강화
- 나. 창업지원 사업영역 확대로 대학-창업기업 간의 이익공유 기반 조성
- 다.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설립 및 대학투자펀드 운영으로 교내 창업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대학의 재정확보에 기여

#### ○ 주요내용

- 가.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설립을 위한 법인 정관
- 나. 이사회 구성원
  - 구성원 : 이사 5명(대표이사 포함), 감사 1명
  - 당연직 이사 : 창업지원단장
  - 이사 추천 요건
    - ① 벤처투자 전문가 ② 창업 전문가 ③ 기타 이사의 직무 수행이 적합한 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

### ○ 주요 질의 및 응답

- 비영리법인에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 ⇨ 비영리법인에서도 외부 사업을 유치해서 할수 있으며,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음. 해당 수익은 법인으로 귀속되며 수익은 발전기금 납부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법인정관을 심의하는 주된 목적, 법인에 대한 인천대의 투자금과 투자수익 발생 시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 창업지원단 유보금액은 2억 5천만원이 있으며, 5천만원은 기본재산이며 2억원으로 투자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창업지원과 관련한 많은 사업이 있는데 법인 유무에 따른 가점이 달라지게 되고, 보고 차원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임.
    - ↳ 법인 설립 후 투자금 발생시 재무경영위원회의 승인 또는 심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청함.
- 제14조와 제17조의 규정내용중 일부가 관련 조항과 문맥수정을 요청하고, 이사회 심의 이후 차기 재무경영위원회에서 최종 정관을 보고를 요청함.

○ 심의결과 : 안건 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됨.

당 초	수 정
<p>제14조(직원의 임면) 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다.</p> <p>제17조(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①~④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이 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제14조(직원의 임면) 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대표이사<del>가</del> 임면할 수 있다.</p> <p>제17조(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①~④ (현행과 같음) ⑤ <u>제3항의</u>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이 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폐회선언

○ 이상 심의안건 논의를 종료하고, 위원장이 16시 05분에 폐회를 선언함.